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정희(중앙대학교)**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021.2.23

이정희 교수  
junghlee@cau.ac.kr  
(중앙대 경제학부)

# 소상공인 주요 현황

➤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에서 사업체 수에서나 고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에서의 기여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는 324만개(2018년 기준)로 전체 사업체 수에서 85%를 차지. 지난 2015년 3백8만개에서 연평균 1.6씩 증가
- 한편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6백6십2만명이 종사, 전체 종사자 수에서 37.4% 비중, 매년 조금씩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소상공인 위상(사업체 수 &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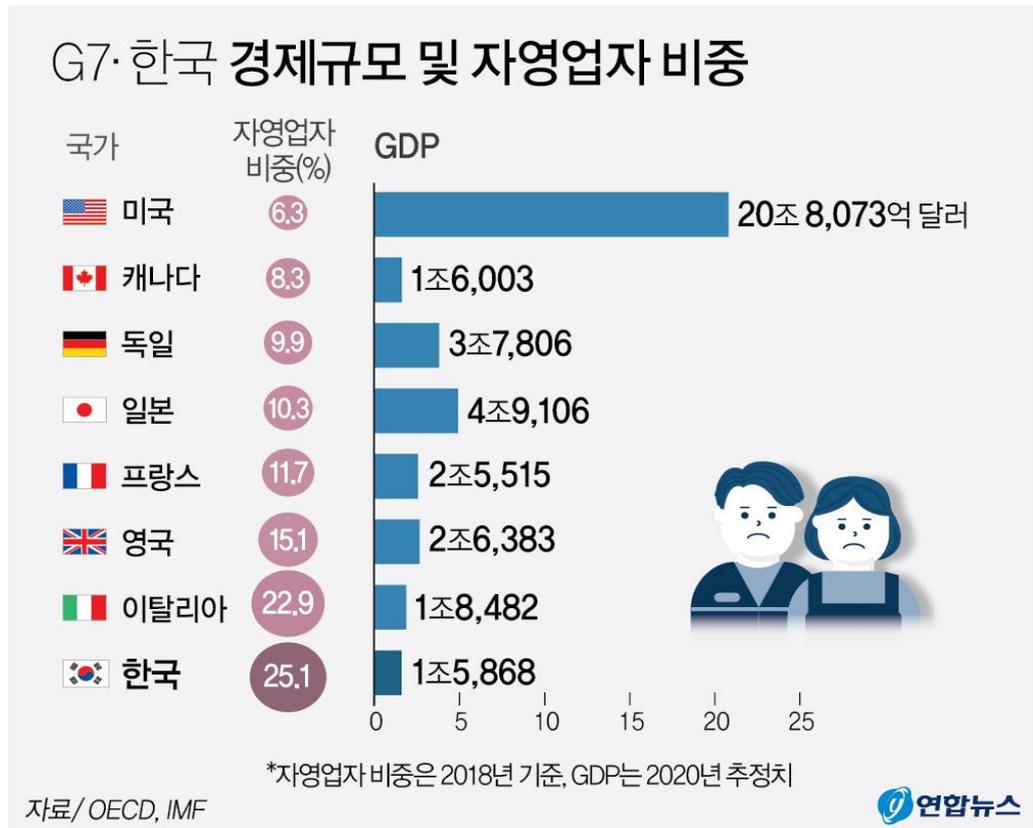
전산업기준 (1인이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체수 (개)	전체	3,545,473	3,604,773	3,676,499	3,737,465	3,810,723
	소상공인 (비중 %)	3,063,001 (86.39)	3,084,376 (85.56)	3,137,700 (85.34)	3,188,006 (85.3)	3,236,238 (84.92)
종사자수 (명)	전체	15,962,745	16,774,948	17,051,453	17,294,316	17,711,917
	소상공인 (비중 %)	6,046,357 (37.88)	6,065,560 (36.16)	6,202,033 (36.37)	6,365,094 (36.8)	6,622,490 (37.39)

자료 :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중소기업위상

# 자영업자 비중 높은 한국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 피해가 가장 큰데, 따라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클 수 있음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G7 국가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6.3%, 캐나다는 8.3%, 독일은 9.9%, 일본은 10.3%, 프랑스는 11.7%, 영국은 15.1, 이탈리아는 22.9%로 모두 우리보다 낮다.
- zeroground@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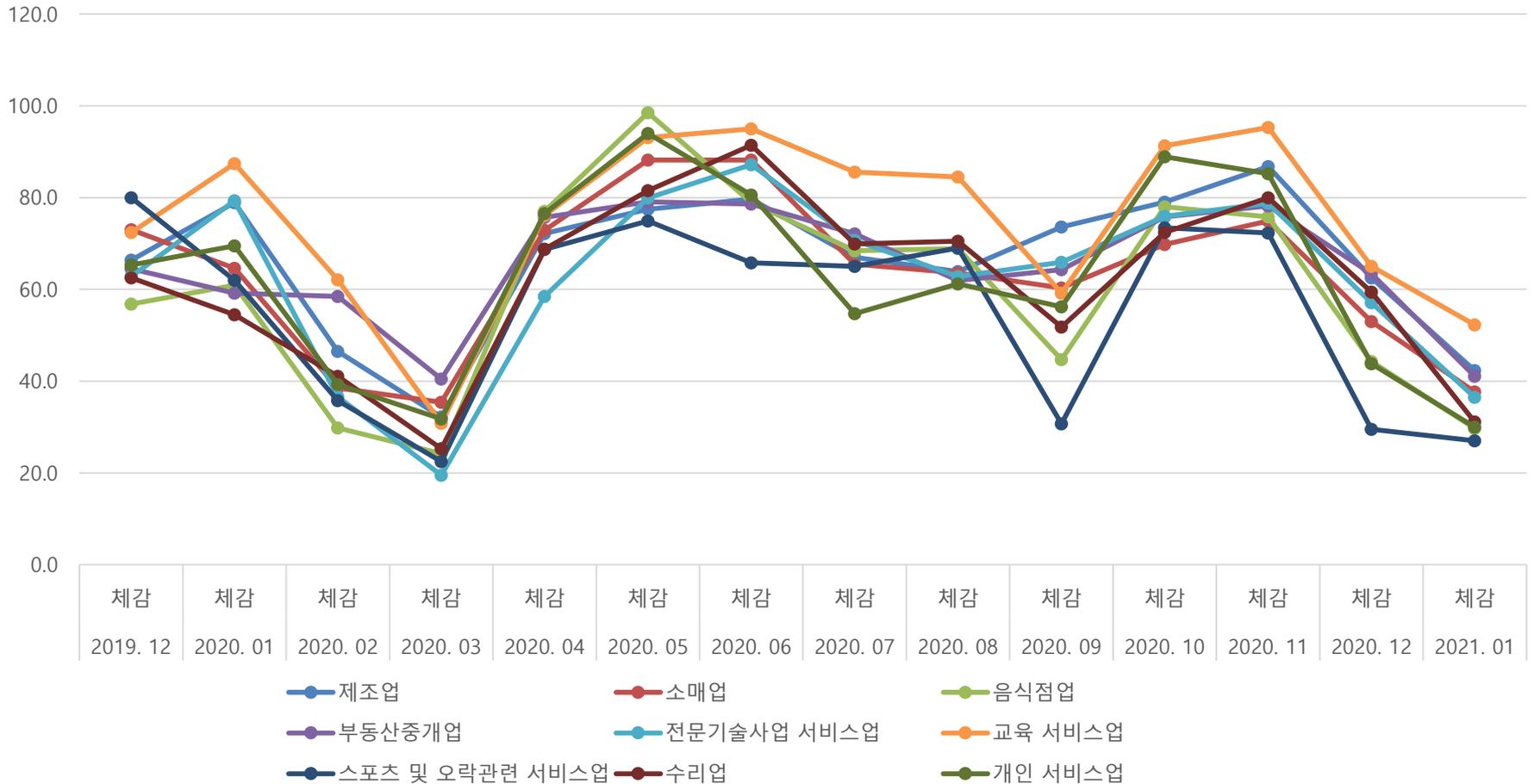
이경아 인턴 / 20210124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코로나19 영향 : 소상공인 실적 체감 변화

-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확진자 확산과 방역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 실적 체감은 반비례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신천지 사태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과 연말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직면한 실적 체감은 크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임

## 코로나19 영향 : 소상공인 경기 체감지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심화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심화
-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전체 평균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업자 방문자 수에 있어서 30%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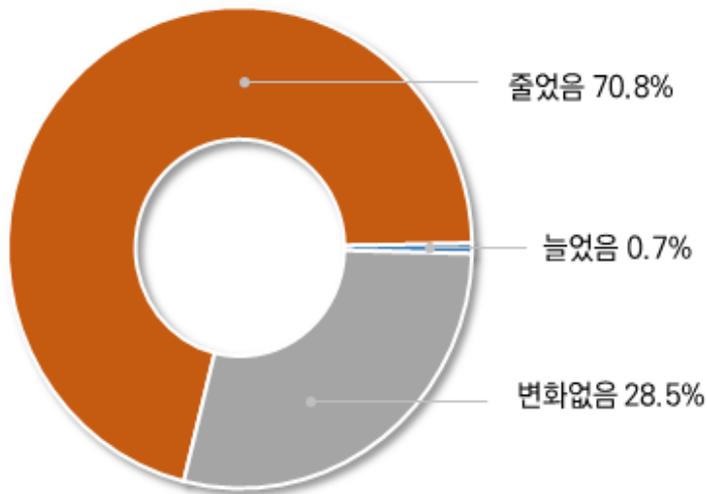
	코로나19 前	코로나19 後	증감(%)
월 평균 매출액 (만원)	3,583	2,655	△25.9
월 평균 영업이익 (만원)	727	468	△35.6
월 평균 사업장 방문자 수(명)	565.5	366.2	△35.4
종업원 수(명)	1.3	1.1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6개 소상공인 대상 조사 결과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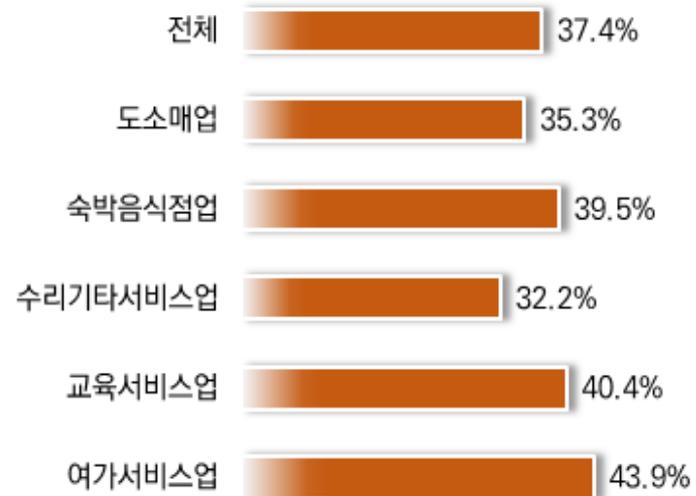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에서 매출 감소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화율 및 감소비율

〈매출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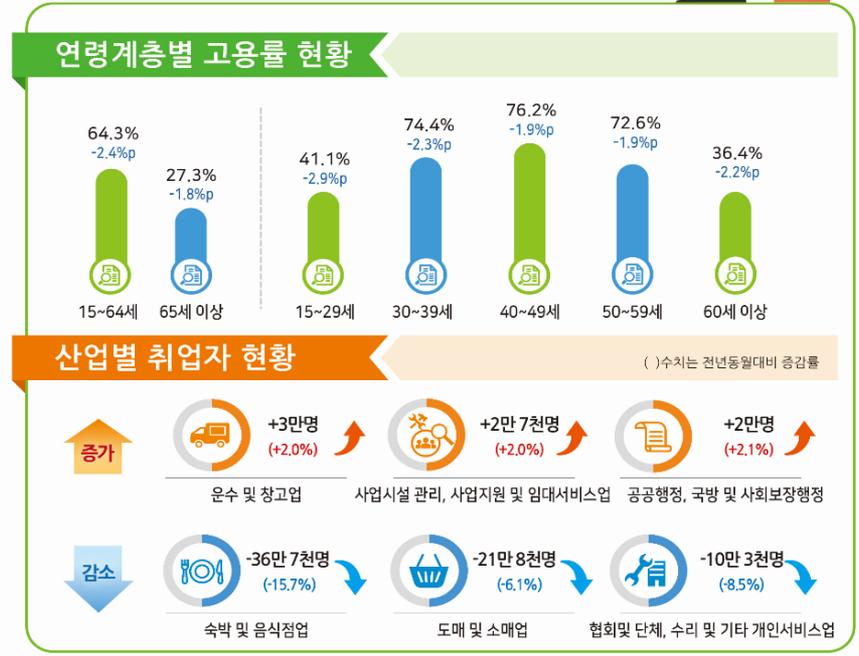


〈매출 감소비율〉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202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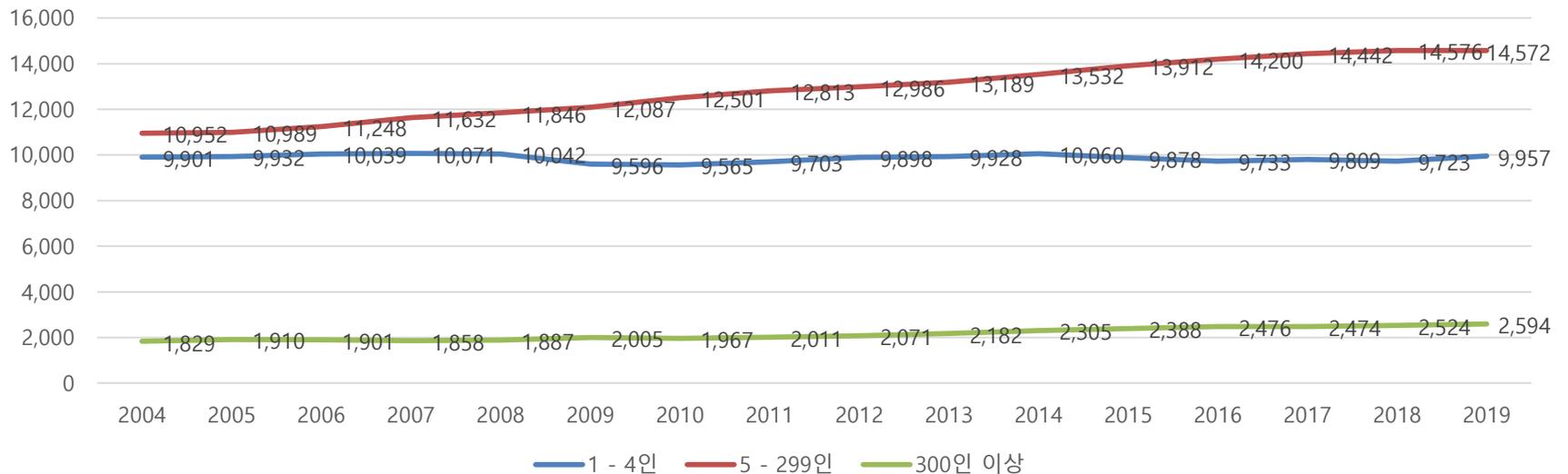
-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기업형 일자리 감소가 소상공인 증가의 주요 원인

- 종사자규모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약 25% 반비례관계를 보이며, 소상공인과 대기업은 약 16%의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약 96%의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도급 협력관계가 크고 또한 서로 경쟁 관계가 크기 때문에 취업자 수에 있어서 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상공인 수는 기업형 취업자 수와 반비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형 일자리 늘리기는 결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나타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일자리 또한 감소하게 되면 이제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심각한 고용 문제 발생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 비교 (단위 : 천명)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각각 76만명, 22만명 감소하였으며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6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56만명, 일용근로자는 23만명 각각 감소
- 한편,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2천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만 8천명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도 9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주로 사회적 약자(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20. 1월	'20. 10월	11월	12월	'21. 1월
임금근로자	57.0	-30.6	-16.9	-51.6	-75.9
. 상 용	66.4	1.4	3.8	0.5	3.6
. 임 시	-3.2	-26.1	-16.2	-35.1	-56.3
. 일 용	-6.2	-5.9	-4.4	-17.0	-23.2
비임금근로자	-0.2	-11.5	-10.5	-11.2	-22.3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4	-16.8	-11.5	-13.8	-15.8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5.3	9.0	5.5	7.5	3.2
. 무급가족종사자	0.9	-3.7	-4.5	-5.0	-9.6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피해가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별로는 운수및창고업(3만명, 2.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7천명, 2.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만명, 2.1%), 금융 및 보험업(1만6천명, 2.0%)에서 증가
- 숙박및음식점업(-36만 7천명, -15.7%), 도매및소매업(-21만8천명, -6.1%), 협회및 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10만3천명, -8.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8만1천명, -15.9%), 교육서비스업(-7만5천명, -4.1%) 등에서 감소
- 고용 감소가 큰 업종은 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이며, 이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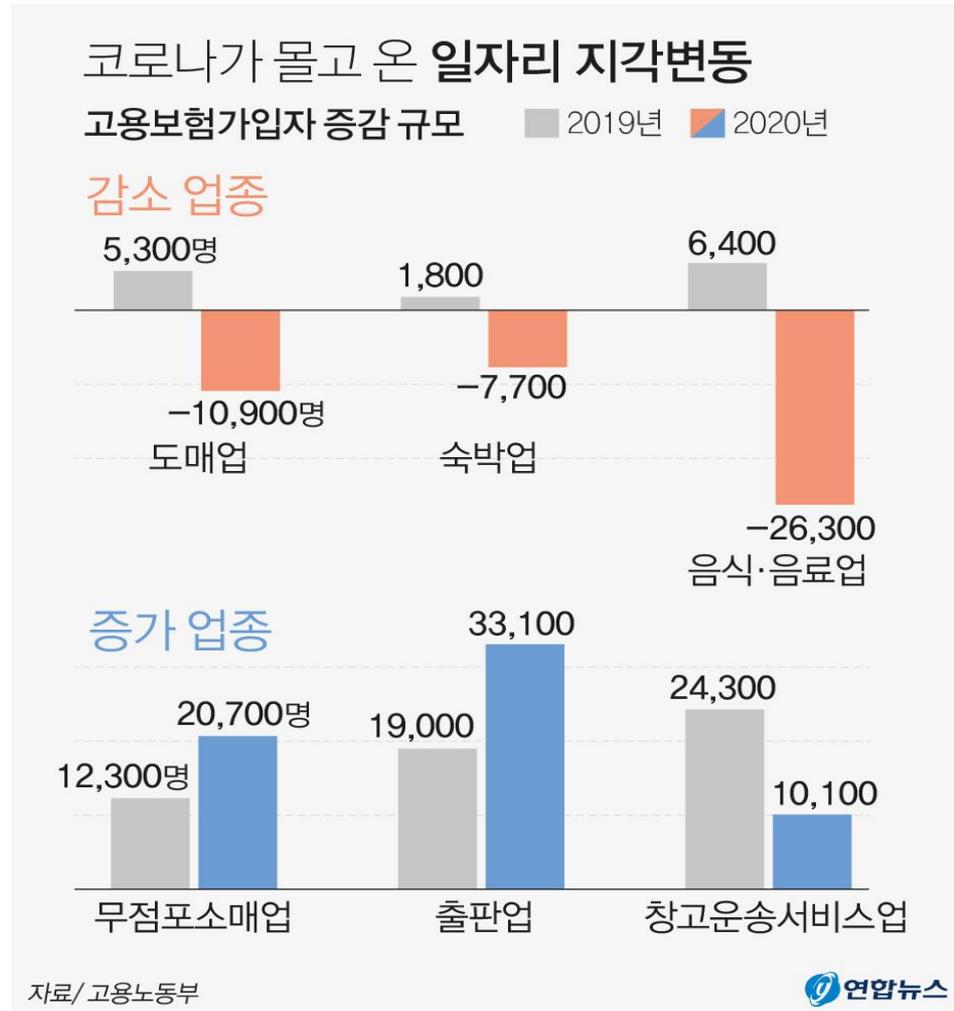
	2020. 1			2020. 12			2021. 1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26,800	100.0	568	26,526	100.0	-628	25,818	100.0	-982	-3.7
◦ 농림어업	1,172	4.4	79	1,276	4.8	59	1,158	4.5	-14	-1.2
◦ 제조업	4,447	16.6	8	4,366	16.5	-110	4,401	17.0	-46	-1.0
◦ 건설업	1,974	7.4	5	2,069	7.8	23	1,955	7.6	-20	-1.0
◦ 도매 및 소매업	3,609	13.5	-94	3,420	12.9	-197	3,391	13.1	-218	-6.1
◦ 운수 및 창고업	1,509	5.6	92	1,521	5.7	29	1,539	6.0	30	2.0
◦ 숙박 및 음식점업	2,332	8.7	86	2,027	7.6	-313	1,965	7.6	-367	-15.7
◦ 정보통신업	849	3.2	-35	851	3.2	-2	835	3.2	-14	-1.6
◦ 금융 및 보험업	781	2.9	-32	780	2.9	-21	797	3.1	16	2.0
◦ 부동산업	553	2.1	33	493	1.9	-66	489	1.9	-63	-11.4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85	4.4	49	1,187	4.5	12	1,170	4.5	-15	-1.2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28	5.0	65	1,379	5.2	38	1,355	5.2	27	2.0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63	3.6	-10	1,135	4.3	91	983	3.8	20	2.1
◦ 교육 서비스업	1,844	6.9	7	1,777	6.7	-99	1,769	6.9	-75	-4.1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94	8.2	189	2,280	8.6	44	2,120	8.2	-74	-3.4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07	1.9	69	456	1.7	-77	427	1.7	-81	-15.9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15	4.5	-19	1,139	4.3	-69	1,111	4.3	-103	-8.5
◦ 기타1)	340	1.3	75	371	1.4	30	355	1.4	15	4.4

1)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의 합계임

자료 : 통계청, 2021년 고용동향, www.kos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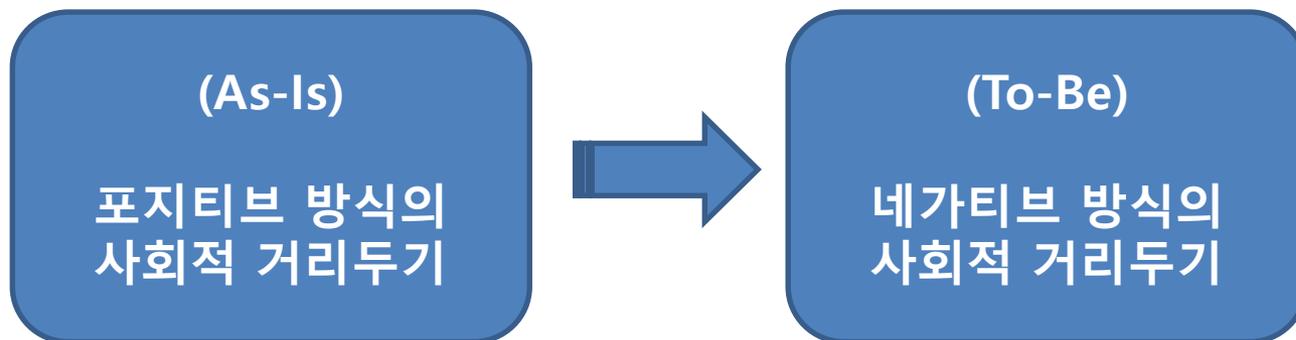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각변동 : 소상공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 장예진 기자 = 1년째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자리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뜨고 지는 일자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 jin34@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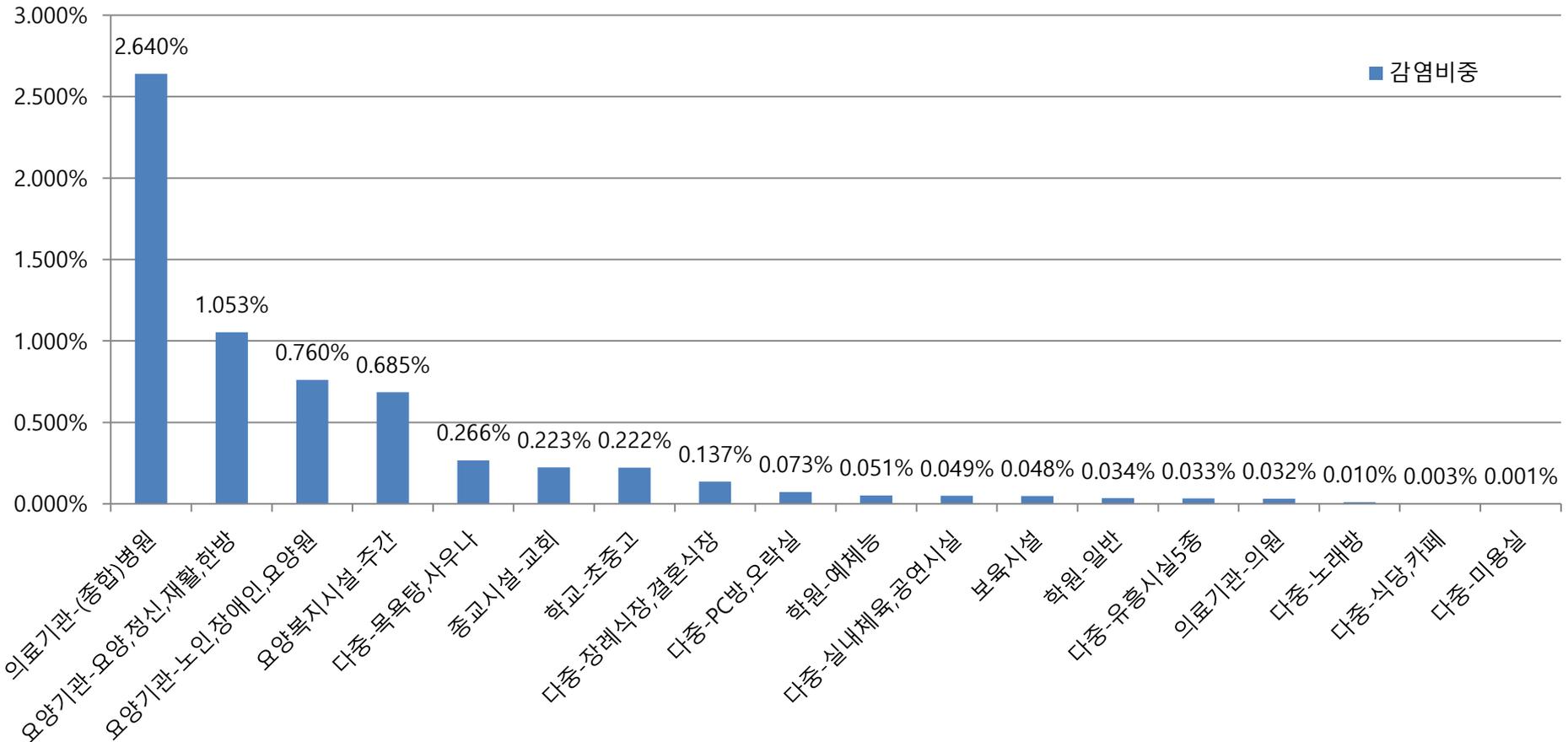
#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며, 이를 네가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
  -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 혹은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법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도 포괄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경제적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 발생처가 아님에도 소상공인 전체 대상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피해 증대

## 코로나19 감염 주요 발생처별 비중(%)



자료 : 김윤교수(서울의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거리두기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부, 2021.2.2

-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업종 중심 규제의 문제점 개선
    - 다중시설 업종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거나, 비밀 차단이 잘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별적 적용 필요
  - 그동안 집단감염이 감염 확산의 주원인의 하나였기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를 통해 방역효과 증대
  
-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개편 필요
  -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재난지원금 수혜 불가, 발생 비용에 대한 부담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방역수칙 강화토록 함)으로 전환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되 자율에 의한 방역 관리를 통해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쪽으로 개편
  
-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 손실을 크게 하는 방식이기에 이러한 방식을 지속하면 소상공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 부담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될 것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방역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고 곧 접종이 시작되겠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전 상황이기에,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할 것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임채운(서강대학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정책



2021년 2월 23일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

#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의 이원화

## 재난지원금

-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대상으로 보편지원
  - 1인 40만원~4인 이상 가족 100만원
-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집중지원
  -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집중지원
  -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 긴급자금대출

- 1차 긴급대출
  - 3천만원 한도, 1~5년, 연 1.5% 고정금리
  - 신용도에 따라 창구 3원화
- 2차 긴급대출
  - 1단계: 피해업종 1천만원, 연2%
  - 2단계: 모든 소상공인 2천만원, 연 3~4%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1차 대출지원 1천만원 이내 소상공인도 최대 2천만원 가능
- 3차 긴급대출
  - 집합제한 피해업종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1천만원 융자 지원, 연 1.9%
  - ☆ 2차 대출지원 금리(2%)와 보증료 인하

월		재난지원금	긴급자금대출
1차	시기	'20년 5월~8월	'20년 3월~4월
	규모	<b>14조3천억원</b> (중앙정부 12조2천, 지방정부 2조1천)	<b>16조4천억원</b>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 지원하며 신용도에 따라 창구 3원화 → 고신용자(1~3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1년 (5.5조원) → 중신용자(4~6등급):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3년 (7.8조원) → 저신용자(7등급 이하): 소진공 경영안정 자금 5년 (3.1조원)
	주요 내용	· 1인 40만원~4인 이상 가족 100만원	· 대출한도: 3천만원 · 대출기간: 1~5년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보증비율: 100% (기은, 소진공)
2차	시기	'20년 추석 전 9월 15일	'20년 5월부터 시행
	규모	<b>7조8천억원</b>	<b>10조원</b>
	대상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본 소상공인	- 1단계: 피해업종 (9만명) 최대 1천만원 (2%) - 2단계: 모든 소상공인 (50만명) 최대 2천만원 (3~4%) → 1차 대출지원 1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원 가능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4.1조원(291만명)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일반업종 100만원	· 대출한도: 1천만원→2천만원 상향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 3~4% (중신용등급 기준) · 보증비율: 95% (12개 시중은행) → 가수요 및 병목현상 부작용 우려하여 대출금리 인하 적용 안함	
3차	시기	'21년 1월 11일	'21년 1월~3월
	규모	<b>5조6000억원</b>	<b>2차 코로나 대출 10조원에서 3조원 배정</b>
	대상	카페, 노래방 포함하여 택시기사, 특고·프리랜서 등 약 580만명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융자 지원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280만명)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 일반업종 100만원	·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 ★ 2차 대출지원 한도 2천만원의 금리(2%대)와 보증료 인하

## □ 재난지원금 및 대출지원의 문제점

### 재난지원금

- ▷ **획일적 지원**
  - 시급하게 시행하여 피해규모가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짐
- ▷ **지원 소외 업종 및 소상공인**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일부 업종이나 소상공인(매출 4억원 이상, 종업원 5인 이상)은 피해 보상 제외
- ▷ **지원금액의 실효성**
  - 전액 무상인 재난지원의 선별기준을 정하지 못해 일률적으로 지급
  - 피해규모에 비하여 지원금액이 매우 적음

### 대출지원

- ▷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 신청에서 집행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 거절될 수 있음
- ▷ **불충분한 대출한도**
  - 2~3천만원 수준의 한도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용 총당 미흡
- ▷ **원리금 상환부담**
  -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지원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전액 상환해야 함
  - 대출지원 확대할 경우 향후 상환 부담이 커지고 대거 부실 발생 우려

## □ 기존 지원대책의 한계와 제약조건

### (1) 예산 제약과 지원금 규모 감소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커지는데 반하여 재난지원금 규모는 감소(1차 14.3조 → 2차 7.8조 → 3차 5.6조)

### (2)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

-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논쟁 → 정치권과 기재부의 갈등
- ⇒ 지원 차수마다 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 결여로 지원 방향성 혼란

### (3)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 미흡

- 피해 소상공인 선별, 피해금액 산정, 지원기준 수립, 예산 배분 및 집행 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4) 일괄 지원 결여로 지원효과 감소 및 집행비용 증가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기간과 피해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수차에 걸쳐 지원함으로써 집행 비용과 부담은 증가하고 효과는 감소

## □ 현장의 목소리

### - 대한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장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탓에 매출 기준 초과로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 형평성이 떨어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무이자 대출, 대출상환 연장 등 실효성 높은 보상 방안을 촉구한다.”

### - 서울 소공동 호프집 사장

“보통 단기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절차에 따라 4대 보험을 들어 주었다가 상시 근로자 수 요건에 맞지 않아 2·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 - 경기도 음식점 사장

“직원 7~8명의 근무시간과 근속 개월 수 등을 따졌을 때 상시근로자가 중기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명 안팎이라 하는데 소진공은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7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 - 서울 암사동의 PC방 사장

“100만원, 200만원의 몇 푼 안되는 현금을 모두에게 쥐어줄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들에게 임대료, 전기세 등 고정비 손실 부문이라도 보전해 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 - 여행업협동조합 K이사장

“중소 여행사는 매출이 거의 0원인 상태로 여행업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과 여행업 무담보 신용대출,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이 필요하다.”

## □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논의

### 4차 재난지원금

#### ○ 지원대상

- 전국민 보편지원 vs. 소상공인 선별지원
- 3월말 선별지원금, 4월 중 보편지원금

#### ○ 지원범위

-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노점상, 신규상인,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포함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종업원 5인 이상 서비스업 확대 고려

#### ○ 지원금액

- 최소 300만원 이상 ~ 최대 500만원
- 15~30조원 예산 예상

### 손실보상제

#### ○ 손실보상법 제정 추진

-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
-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에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이 없음
- 헌법상 재산권의 손실 보상은 법률에 근거

#### ○ 손실보상의 기준과 계산

- 매출액 아닌 영업이익을 보상기준으로 검토
- 집합제한 정도에 따라 30%, 50%, 70% 차등 보상
- 매출 이익 계산이 어려운 매장은 정률로 일정액 보상
- 최대 한도 설정

#### ○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의 소급 보상 논란
-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규정 필요

#### ○ 시기적 실효성

- 법률 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 지원 효과 감소

##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고려 사항

-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제공되려면 피해 보상의 기준과 비율이 결정되어야 함

### (1) 피해의 정의와 기준

- 소상공인 영업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것인가?
  - 매출액, 영업이익, 비용, 최저임금
  - 선진국은 매출액과 이익을 주로 사용
  -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의 매출액이나 이익의 손실 추정이 어렵고 자료 부담이 큼
-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기준이 손실의 하한선이며, 추정과 입증에 용이함
  - 종업원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종업원 인건비 대신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인의 인건비 지원을 제공

### (2) 피해 기간 및 보상 비율

- 방역단계에 따른 업종별 영업제한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고정비 손실을 보상 지원
  - 금지업종: 영업금지 기간 동안의 고정비 70%
  - 제한업종: 영업제한 기간 동안의 고정비 50%
  - 일반업종: 거리두기 단계(2단계 또는 2.5단계) 기간 동안의 고정비 30%
  -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2020년의 실태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 결정

## □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의 제안: 선 대출, 후 정산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함
  - 대출을 사전적으로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금액을 정산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피해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
- 4차 대출을 1억원 한도,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상환)로 책정
  - '21년 1월 7일 현재 소상공인 79만명에게 총 18조3천억원 대출
    - 1인당 평균 2천3백만원의 대출잔액
  - 중복 대출을 허용하고 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제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7천7백만원 대출 가능
    - 현재까지 생존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 정도 금액으로 2021년 한 해를 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신용보증 100%를 제공하여 은행권에서 신속하게 용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금리는 3차 대출지원 금리(2%)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거나 또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차 대출지원의 금리(3~4%) 수준도 고려
  - 거치 기간(예: 3년) 내에 2020~2021년 동안 방역조치로 피해본 고정비용 손실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원리금에서 차감함
    - 사후 보상할 재난지원금의 기준을 명확해 공지하면 소상공인은 손실 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출액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 예산을 고려하여 보상한도(예: 3천만원~5천만원) 설정

## □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의 제안: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p><b>선 대출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1억원 (한도에서 중복 대출 허용)</li> <li>· 대출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li> <li>· 대출금리: 연 2~3%대</li> <li>· 보증비율: 100%</li> <li>· 보증료율: 연 0.3% 수준</li> </ul>
<p><b>후 피해정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2020~2021년 거리두기 단계 시행 일수</li> <li>· 보상기준: 고정비용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li> <li>· 보상비율: 금지업종 ~ 70% 제한업종 ~ 50% 일반업종 ~ 30%</li> <li>· 보상한도: 3천~5천만원 (가용 예산 고려하여 결정)</li> </ul>

## □ 자금대출과 재난지원금 연계 패키지 지원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적인 대출을 통하여 시급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해소시킬 수 있음</li> <li>- 재난지원금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자료 준비와 제출, 심사와 평가가 여유있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li> <li>- 대출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시켜 줌으로써 대출상환의 부담 경감</li> <li>- 지원 횟수의 감소로 집행 효율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 가수요 및 병목현상 부작용 우려</li> <li>- 사후 피해지원금 정산 과정에서의 민원 및 갈등 발생 가능성</li> <li>- 저금리 장기 대출에 따른 이차 보전 및 보증료 지원예산 부담</li> <li>- 대출금 상환 부실 가능성</li> </ul>

## □ 맺음말

### ○ 시급성과 실효성 높은 소상공인 지원 초점 필요

-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상화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공급
- 2021년 한해 동안의 고정비 지급 능력 보강할 수 있는 대출 지원

### ○ 피해지원 또는 손실보상은 사후적 구제책

- 거리두기로 심각한 영업피해를 입어 매출이 전무하여 정상화 때까지 버티지 못하거나 전업·폐업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중점
-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비 또는 고정비 손실의 부분 지원으로 빈민층 전략 방지 및 재도전 자금 보충
- 전업·전직할 경우 패키지 지원(대출 연장+이자 경감+생계비+교육·훈련+취업 알선)

### ○ 영업정상화와 소비활성화가 궁극적 해결책

- 코로나19 사태의 조속 종식에 맞춰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대책 수립
- 팬데믹 종료 이후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등에 재정 투입

### ○ 2020년 영업실태와 피해상황에 관한 정밀 분석과 진단에 기초한 합리적 지원정책 도출

- 다양한 관점과 창의적 대책 논의는 건설적,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논쟁은 파괴적
- 정치적 입장과 부처 이해관계를 넘어선 범국민적 합의 통한 재난지원 방안 모색

